

문서번호 : DWS - 4 - 233

2019.11.11.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상품팀 담당자 앞

제 목 : 모범규준 등 개정에 따른 소규모펀드 수시 공시(1 개월)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본시장법 제 89 조, 동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4 호 및 제 5 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규모펀드 수시 공시(1 개월)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시 사항 : 소규모 펀드 수시 공시(1 개월)**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으로,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공시사유 발생일자: 2019 년 11 월 10 일**

**다. 공시대상 소규모펀드**

협회표준코드	펀드명(투자자펀드)	발생일자
KR5231754205	디더블유에스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A	20191110
KR5231758222	디더블유에스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C-e	20191110
KR5231758909	디더블유에스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C1	20191110
KR5231993787	디더블유에스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C2	20191110
KR5231993795	디더블유에스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C3	20191110
KR5231993811	디더블유에스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C5	20191110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동 근, 크리스토퍼 유한 김 (인)



수신처: KB 증권, KEB 하나은행, NH 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씨티은행,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DB 금융투자, 부국증권, 부산은행, 삼성증권, 유진증권, 상상인증권